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함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9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성함제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규남, 김성준,
김원태, 남창진, 박승진,
박영한, 박철성, 서상열,
오금란, 왕정순, 유정희,
이상훈, 이영실, 이원형,
이종태, 이종환, 정준호,
최민규, 홍국표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(2024.6.28.)에 따른 조직 개편에 따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위상 및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위상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함. (안 제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기술심사담당관”을 “건설기술정책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(이하 "시"라 한다)의 행정(2)부시 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시의 <u>기술</u> <u>심사담당관</u> 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 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건설</u> <u>기술정책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신설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위상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(안 제2조제2항)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주병준
추계세제팀장	김중헌
추 계 분 석 관	김지혜
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